고용노동부	보도참고자료		한국판뉴딜
보도 일시	배포 즉시	배포 일시	2022. 4. 15.(금) 16:00
담당 부서	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	책임자	과 장 양현수 (044-202-8901)
		담당자	서기관 김용주 (044-202-8902)

안경덕 장관, 사망사고 고위험 제조업 사업장 불시점검

□ **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**은 4월 15일(금) 16:00부터 약 1시간 동안 인천시 남동구 소재 **제조업 사업장을 불시에 방문**하여 현장의 **안전보건관리 실태**를 직접 점검하였다.

* 한국단자공업(주) 논현공장 : (규모) 144명, (업종)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업

○ **이번 현장점검은 전반적인 사망사고 감소 추세에도 불구**하고 **최근 제조업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점**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.

□ **안경덕 장관은**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산업안전보건감독관과 함께 **현장의 기본 안전·보건조치 준수여부를 하나하나 직접 확인**하면서,

○ **관행적인 안전조치 미준수** 등 사업주가 **유해·위험요인을 방치**하여 발생한 **사망사고**에 대해서는 최대한 **엄정하게 수사할 방침**임을 밝혔다.

□ **안경덕 장관**은 "**대부분의 사망사고는 중대재해 발생 이력**이 있는 사업장에서 **반복 발생**하고 있으며 **기본적인 안전·보건조치 미준수가 원인***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"라면서

* ▸ (추락) 지게차 유도작업 중 작업구간 내 개구부(높이 약 3미터)로 추락하여 사망 → 개구부 덮개 미설치 등 추락 방지 조치 미실시

▸ (끼임) 사출성형기 내부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동료작업자가 기계를 작동시켜 설비 사이에 두부가 끼어 사망 → 정비 작업 시 잠금 및 표지부착 조치 미실시

○ “끔찍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·보건 조치와 작업매뉴얼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”이라면서

○ “경영책임자(대표이사 등)가 안전보건전담조직 등을 활용하여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여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”을 당부했다.

> 🗁 **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 점검 의무**
>
> △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경영책임자 등은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준수되고 있는지 등을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→ **금년도 6월말까지 완료 필요**
>
> △ 주요 점검사항: ①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준수, ②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, ③유해·위험요인 확인·개선 여부, ④종사자 의견수렴 여부, ⑤중대재해 발생시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, ⑥도급·용역·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

□ 아울러 “안전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며 누구나 가볍게 실천할 수 있는 안전활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최고의 안전전략”이라면서

○ “작업 전 10분 안전조치 확인, 동료 개인보호구 챙겨주기, 이동통로 청소, 공구 정리 등 지킬 수 있는 사소한 안전 활동을 찾아 습관이 될 때까지 매일 실천한다면”

○ “모든 작업자가 ‘안전한 작업’에 익숙해지게 되고 형식·서류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넘어 구성원 모두의 작은 실천에 기반을 둔 튼튼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현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